

제 9 편 부대시설공

- 제 1 장 일반사항
- 제 2 장 휴게시설
- 제 3 장 체인탈착장
- 제 4 장 비상주차장
- 제 5 장 방음시설
- 제 6 장 환경영향저감시설
- 제 7 장 영업시설
- 제 8 장 방풍시설
- 제 9 장 긴급개구부

제1장 일반사항

1.1 적용범위

- (1) 이 지침서는 도로법 제 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고속국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이 지침서는 도로법, 고속국도법, 도로교통법,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을 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본 지침의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.

1.2 목적

- (1) 이 지침서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, 제반 부대적인 시설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기준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,
- (2)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, 비상 상황시 대처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1.3 종류

1.3.1 휴게시설

- (1) 휴게시설은 운전자의 장시간 고속주행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고,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시키며, 자동차의 급유, 정비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.

1.3.2 체인탈착장(脫着場)

- (1) 체인탈착장은 적설 한랭지 도로에서 차량 타이어에 체인을 장착 또는 탈착하기 위해 본선에 별도로 설치하는 시설이다.

1.3.3 비상주차장

- (1) 비상주차장은 긴급정차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본선 차로에서 벗어나 대피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.

1.3.4 방음시설

- (1) 방음시설은 도로 및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제반 소음이 주변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.

1.3.5 환경영향저감시설

- (1) 환경영향저감시설은 “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”에 의하여 도로의 건설사업시 환경영향저감을

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.

1.3.6 영업시설

- (1) 영업시설은 유료도로 통행차량의 통행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본선 및 인터체인지에 설치하는 시설이다.

1.3.7 방풍시설

- (1) 방풍시설은 강풍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통행차량의 주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.

1.3.8 긴급개구부

- (1) 고속도로 개구부는 긴급상황 발생시 통행차량의 대피 및 반대차로로의 회차, 고속도로 유지관리 차량의 신속한 접근과 회차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.

1.4 설계 공통사항

- (1) 도로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은 접근편의성, 시인성, 본선과의 상호관계,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시설물별 목표와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.
- (2)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이나 급경사 구간과 같은 곳은 가급적 설치를 피하고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고려하여 각 시설물의 설치에 적합한 곳을 선정한다.
- (3) 각 시설들 간의 거리는 너무 가깝거나 또는 너무 멀리 설치되지 않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.
- (4) 차량이 각 시설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안내의 적정성을 가져야 한다.